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윤 유 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0-130
----------	----------

발의연월일: 2020년 11월 일

발 의 자: 윤유선, 이충현, 김현희, 강선영
신낙형, 이종숙, 황동현, 김성한
김병진, 박성호, 김용원, 김동협
송순효, 이충숙, 박주선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리 구내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내 노동자 권리 보호 문화의 확산과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노동자, 사용자, 취약계층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마.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5조)

바.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8조)

사. 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자.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차.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제17조)

카. 시행규칙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1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근로기준법」 제1조,
- 2)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4조
- 3)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나. 협조부서: 일자리정책과

다. 입법예고: 2020. 11. 6. ~ 2020. 11. 11.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노동자 및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2. 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
3. 구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사용자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일과 삶의 균형과 문화적인 생활을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노동정책 수립 및 이행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청장의 책무사항을 포함하여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경우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 및 평가)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 침해발생 시 권리 구제 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지원, 정보제공 및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 및 노동자가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에 노동관계법령 교육체계 개설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취약계층 노동자권리 보호) ① 구청장은 비정규직, 청소년, 여성, 고령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와 생활 안정,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취약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과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산업안전 및 보건) 구청장은 노동자와 구민이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실태 파악
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환경개선 지원
3. 화학물질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동자의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4조(일과 삶의 균형) 구청장은 노동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
2.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홍보 및 지원
3. 육아휴직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 지원

제3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제15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3.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평가
4. 노동인권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노동자권리보호를 위한 시책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제1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구 노동관계 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강서구의회의 의원
2.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노동분야 정부기관, 노동단체, 비정규직과 여성을 포함하는 시민 사회단체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정례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노동행정 및 노동자 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 ⑥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근로기준법」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4조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근로자가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중소기업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고용하는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기금·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26.>